

◎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6-48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06.10.26.)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22-87호(2022. 09.28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된 충무로4가 108-21번지 일대 세운 6-4-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9월 2일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4-2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
2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4가 108-21번지 일대 / 3,239.4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- 주 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비동 21층(을지로2가, 파인에비뉴)
 - 성 명 : 더뉴충무로피에프브이 주식회사
4. 사업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
5.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일 : 2026.09.02.
6. 변경내용
 - 사업시행자 변경 및 규약 변경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성 명	더뉴스퀘어 주식회사	더뉴충무로피에프브이 주식회사	
주 소	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21-1, 301호 (단계동, 엠스타빌딩)	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00, 비동 21층 (을지로2가, 파인에비뉴)	

- 사업기간

구 분	변경 전	변경 후	비 고
사업기간	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	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	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: 별첨

8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정비과(☎02-3396-5753)에 비치